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여성전용 숙박업 신설〉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40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74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24인
- (2) 제 안 일 : 2025. 1. 23.
- (3) 회 부 일 : 2025. 1.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운영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에 기존의 숙박업 외 여성만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여성전용 숙박업을 새로이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3. ~ 7. (생략)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여성전용 숙박업”이란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말한다.</u>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나. 주요 검토 사항

□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여성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20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여성전용 숙박업을 신설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¹⁾에 서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여성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여성전용 숙박업을 신설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207741호) 제49조의3제1항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기관에 여성전용 숙박업,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여성전용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²⁾함으로써 성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5. (생략)

폭력범죄자의 여성전용 숙박업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제49조의3 신설	·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최대 10년의 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여성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명령하여야 함. · 여성 관련 기관: 여성전용 숙박업,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 및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 다만, 개정안은 이용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숙박업과는 별도로 여성전용 숙박업을 신설하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은 숙박업 외에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히 숙박업의 경우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으로 구분되는 등³⁾ 성별에 따른 업종 구분은 없는 가운데,

숙박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면서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영업방식을 정하여 ‘여성전용’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새로 업종을 신설하는 방안⁴⁾보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공중

2)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의안번호 제774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여성전용 체육시설업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의안번호 제7742호)도 동시에 발의되었음.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4) 참고로, 미취학 아동 출입제한 식당, 남성전용 단란주점 등의 경우 별도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2의 여성전용 숙박업’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으로서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으로 수정하는 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여성 전용 숙박업의 개수, 지역별 현황(2024. 12월 기준) >

(단위: 개소)

구분	여성전용 숙박업소 수
총계	2
강원	1
제주	1

* 상기 2개 시·도 외 지자체는 해당 사항 없음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취합자료

□ 그 외,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은 적절한 공중위생관리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별 시설·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적정 위생관리를 위해 시설·설비 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숙박업 종류를 세분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생관리 및 업소 시설·설비와 관계없는 이용객 성별을 기준으로 숙박업 종류를 세분하는 것은 법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어긋나고, 실제 여성전용 숙박업소 또한 매우 적어 개정의 실효성도 미미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구 분	의견 내용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 규정 내용, 운영 현황 등 고려 시 이용객의 성별을 기준으로 신종 숙박업의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은 신중 검토 필요 •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 “여성 관련 기관” 신설 등 성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법무부	•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숙박업 취업을 금지하여 여성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중위생관리법」상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데, 여성전용 숙박업의 경우 그 적용이 불분명하여 보완 검토 필요
숙박업중앙회	• 「공중위생관리법」은 일반 및 생활숙박업(여인숙, 여관, 모텔, 일반호텔)을 소관하고, 해당 숙박업은 주로 가족 및 이성이 이용하는 주된 시설·공간이므로, 여성전용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과 부합하지 않음(여성전용 숙박업은 「관광진흥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도시민박, 농어촌민박, 한옥체험업 등에 해당할 수도 있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 숙박업자는 영업상 필요 시 영업자의 판단에 따라 소비자를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영업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여성전용 숙박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행정운영이 필요한 사회적 공익이 없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00